

2022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



성 북 구
(문화체육과)

2022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42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1. 11.
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도모하고,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방송 콘텐츠의 직접 제작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시설장비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관계법령 및 업무협약에 따라 2022년도 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(개정 2014. 5. 28.)

나.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법 제90조의2 제5항에 의거 설립되었으며, 본조 제7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(시청자미디어센터)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

다. 방송통신위원회, 서울특별시, 성북구,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상호 체결한 “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” 제5조에서 센터 운영비의 20%는 성북구가 부담하기로 하였음

- 운영비 부담비율 : 방송통신위원회 60%, 서울시 20%, 성북구 20%

라.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주요기능

- 시청자 미디어교육·체험 및 홍보 지원
- 시청자의 영상 및 방송제작 지원 및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
- 시청자 권익증진 활동지원 및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「방송법」 제90조의2(시청자미디어재단)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예산편성

붙임 : 2022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(안)

2022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(안)

1. 출연대상 현황

- 출연대상 :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
- 일반현황
 - 개관일자 : 2015. 6. 30.
 - 설립근거 : 방송법 제90조의2(시청자미디어재단)
 - 위 치 : 성북구 길음로7길 20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1~3층
 - 운영인력 : 센터장 포함 총 11명(정원 12명)
- 시설현황
 - 규 모 : 지상 1~3층, 전용면적 1,791.10m²
 - 주요시설 : 교육시설, 방송·체험시설, 제작지원실 등

교육시설	• 디지털교육실 I,Ⅱ, 일반교육실 I,Ⅱ
방송·체험 시설	• 방송제작 스튜디오 • 종합녹음실 • TV 체험 스튜디오, 라디오 스튜디오, 1인미디어 스튜디오
제작지원 시설	• 편집실 3개 • 장애인제작실, 더빙실 • 장비대여실
기타시설	• 사무실, 대회의실, 제작단실, 세미나실, 강사휴게실 등

2. 출연사업 개요

주요 기능	세 부 내 용
전 국민 미디어 교육	○ 국민의 미디어 이해 및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교육 ○ 미디어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미디어교육·체험 운영
시청자 콘텐츠 제작 지원	○ 영상제작장비 및 시설 무상 대여를 통한 시청자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○ 시청자 방송 참여를 위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 교육 ○ 제작 멘토링, 커뮤니티 운영 등 시청자 콘텐츠 제작 지원
시청자 권익증진 강화	○ 미디어강사 소모임 지원 및 미디어센터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 ○ 지역 시청자참여 행사개최 및 시청자 권익증진 인식개선
소외계층 미디어교육	○ 장애인, 새터민, 다문화가정 등의 미디어 이해 함양 ○ 소외계층 대상 미디어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사회 참여 지원

3. 필 요 성

- 성북구를 포함한 서울지역의 미디어 관련 문화 인프라 구축
- 서울 시청자의 미디어 소통능력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 강화
-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서울시, 성북구가 상호 분담하는 운영비에 대한 출연 필요

4. 출연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「방송법」 제90조의2(시청자미디어재단)
- 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」

5. 기대효과

- 자치단체·방송사·대학 등 유관기관 및 지역(주민)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미디어 관련 문화예술사업의 발굴 및 협업 가능
- 지역주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시청자 권익 향상에 기여
- 마을미디어의 제작·지원 등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도모 가능
- 방송·통신 취약계층의 미디어 향유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 제공

【관련근거】

□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방송법

- 제90조의2(시청자미디어재단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.
- ②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법인으로 한다.
- ③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- ④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1. 미디어에 관한 교육·체험 및 홍보
 2.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
 3.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
 4.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
 5.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
 6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- 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.
- ⑥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
- ⑧ 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업무 협약

- 제5조(운영비 부담)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.
1.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%를 부담한다.
 2.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%를 출연한다.
- ② 운영비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상호 사전 협의한다.